

의안
번호

436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03. 19.

전문위원 김동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경수현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436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02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5. 03. 13.

2. 제안이유

- 중소벤처기업부의 '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' 조례 협의(안)에 따라 현행의 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용도 지역별로 구분하고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(안 제2조)
- 나. 지원사업에 대한 항목 추가(안 제5조)가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5. 03. 06. ~ 2025. 03. 12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용도 지역별로 구분하여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

(1)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 기준을 '상업지역'과 '상업 외 지역'으로 구분하고, '상업 외 지역'에 대해서는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30개 이상 밀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상업지역: 30개 이상▶ 상업 외 지역: 25개 이상▶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: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. 다만,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- 「전통시장법」 제2조제2호의2¹⁾에서 골목형상점가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1) 「전통시장법 시행령」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의2. "골목형상점가"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 · 특별자치시 · 시 · 군 · 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"시 · 군 · 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²⁾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,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〈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〉

연번	구역명	상인회		규 모 (785개)		지정일	용도구역
		대표자	상인수	면적(m ²)	점포수		
1	정릉서경대길	이상문	70명	4,952.7	75개	'21. 8. 3.	제2종일반주거
2	꿈의숲 장곡	백 현	55명	2,615.8	66개	'21. 8. 3.	제2종일반주거
3	성북천	박기현	30명	6,146.5	94개	'22. 8. 10.	준주거
4	배밭골	최영출	32명	3,732.8	64개	'22. 8. 10.	제1종일반주거
5	종암북바위길	정창양	63명	9,667.0	157개	'22. 8. 10.	준주거 & 제2종일반주거
6	석계음식문화거리	원복희	104명	10,543.5	161개	'23. 8. 10.	제2종일반주거
7	월곡달빛오거리	강태이	86명	10,408.2	168개	'23. 8. 10.	제2종일반주거

- 따라서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조례 협의(안)에 따라, 상업 외 지역의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, 협의안에 대한 조례 반영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사료 됨.

2) 「전통시장법 시행령」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"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□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(안)

구 분		밀집기준 변경(안)
대도시 (특별시·광역시 내 읍면동)	상업지역	2,000m ²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으로 밀집
	상업지역 외	2,000m ²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
중소도시 (특별도·시, 도 내 읍면동)	상업지역	2,000m ²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
	상업지역 외	2,000m ²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
농어촌(군 내 읍면동)		2,000m ²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

<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-173호(2024.1.22.)>

(2)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사업 추가(안 제5조)

-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상인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. 이는 「전통시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(3) 별표 제1호서식 개정(안 제5조)

- 그 밖에 별지 제1호서식은 조례의 제명 중 오타 부분을 정비한 것임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고,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이 육성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골목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.